

제264회 임시회

2007. 10. 22(월)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10월 8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3. 제안이유

가. 민선이후 공공부문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나.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

4.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 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재직자, 그 밖에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함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정지원(안 제12조, 제13조)

- 갈등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검토의견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간, 자치단체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특히 각종 국책사업 공모 등을 둘러싼 공공부문의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음.

우리도의 경우에도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군 교육기관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 공모를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

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부문의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